

KCS 64 10 30 : 2023

환경관리

2023년 01월 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 · 개정 연혁

-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30 환경관리로 제 ·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 · 개정 (년. 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발전 등 건설기술 발전에 현추세(現趨勢) 반영,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해외자료의 분석과 관련 각종 시방서, 시설기준 및 제규정 등과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반영, 개정	개정 (198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환경의 변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품질향상 기준을 구체화 하고, 환경보호와 기반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 보완, 개정	개정 (1996.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로 개칭하고,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등 대폭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태풍, 이상과랑 및 지진해일 등 이상기후 대응과 저탄소, 온실 가스저감 등 녹색항만 및 친환경 설계 반영, 매스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필터매트, 함선, 마리나시설 관련 시방 보완, 개정	개정 (2012.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표준시방서를 시방코드 (KCS 64 00 00)로 개편하고, 타 분야 시방코드와 중복·상충 항목을 비교, 검토하여 보완	개정 (2017.08)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 코드화하고, 특수 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계로 개편	개정 (2018.0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10 30)	•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강화된 건설안전 관련 규정 반영 및 국가건설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등을 현행화 하여 건설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 및 코드번호 등 개정	개정 (2023.01)

제 정 : 2017년 8월 16일 개 정 : 2023년 01월 30일
 심 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자연환경관리	2
1.5 생활환경관리	3
1.7 현장환경관리	5
 2. 자재	6
 3. 시공	6

KCS 64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 법규에 따른다.
- (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05 공사일반(1.1.2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자연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 (1)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환경 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4.2 동물보호

- (1) 수급인은 이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수급인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식물보호

-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해야 한다.

1.4.4 지하수 보호

- (1) 수급인은 지하수를 공사용으로 개발하거나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深井) 등 폐공(廢孔)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 ③ 폐공 구간에 공매(孔埋)재료의 충전(充填)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 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1.5 생활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5.2 대기 오염 방지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4 대기질)에 따른다.
- (2)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물 뿌리는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1.5.3 수질오염방지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5 수질)에 따른다.
- (2) 공공수역에서 분노,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4 소음·진동방지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6 소음·진동)에 따른다.
- (2)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지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3)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전담하여 해결 해야 한다.

1.5.5 폐기물 처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7 폐기물)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 (3)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 (5) 수급인은 이 공사를 수행할 때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사감독자, 발주자, 수급인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 하되 최종결정은 발주자가 한다.
- (6)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7)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5.6 토양보전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8 토양보전)에 따른다.

1.5.7 생태계 보전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9 생태계 보전)에 따른다.

1.5.8 경관훼손

- (1)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처리해야 한다.

1.5.9 기타 환경관리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10 기타 환경관리)에 따른다.

1.6 분쟁의 조정

- (1) 수급인은 이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급인이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2) 수급인은 이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발파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7 현장환경관리

1.7.1 공통사항

-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협의내용과 관련 사항이 없더라도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2 공사 환경관리

- (1) 수급인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 (3) 수급인은 수중 굴착공사 등을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 (4) 수급인은 민원 및 환경영향이 예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5) 수급인은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수급인은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7) 수급인은 시공 중 환경관리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1.7.3 공사 후 환경관리

- (1) 수급인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1) 이 기준은 KCS 10 10 30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총괄	안익성	(주)항도엔지니어링	사장
	항만및해안	김진호	(주)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및해안	류혁근	(주)삼영기술	부회장
	품질및안전	강기중	코모씨스(주)	대표이사
	품질및안전	이상웅	(주)항도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이재진	한국항만협회	부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박수현	한국항만협회	차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홍성현	한국항만협회	과장

심의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항만및해안	고장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항만및해안	이명호	(주)혜인이앤씨	부사장
	항만및해안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토목시공	류성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토목시공	문성현	(주)건화	이사
	토목시공	허정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장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의 장	이 수 호	해 양 수 산 부	국 장
	항 만 개 발	이 종 인	전 남 대 학 교	교 수
	항 만 개 발	우 수 한	중 앙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영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구 위 원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인 호	강 원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정 민 영	(주) 유 신	부 사 장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조 미 라	인 덕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송 정 화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장

해양수산부	성명	소속	직책
	이 수 호	항 만 국	국 장
	전 충 남	항 만 기 술 안 전 과	과 장
	이 귀 섭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설사무관
	김 슬 기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 설 주 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30 : 2023

환경관리

2017년 8월 16일 제정
2018년 4월 17일 개정
2023년 1월 30일 개정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1~3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s://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센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02-2165-0103~6 E-mail : kpcs@koreaports.or.kr

<https://kpcs.portcals.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https://www.mof.go.kr>